

 신안산대학교	정보화위원회 규정	규정번호 4-1-39 제정일자 2001. 3. 1. 개정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전산정보원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교”라 한다)의 정보화 사업 추진과 정보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정보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22.06.02. 개정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정보화 장·단기 계획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제반업무
2. 대학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2022.06.02. 개정>
3.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2022.06.02. 개정>
4. 정보보안 강화 및 보안성 검토 <2022.06.02. 개정>
5. 정보보안 지침의 수립, 이행 상태의 확인 처리 <2022.06.02. 개정>
6. 기타 정보화사업의 기획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 <2022.06.02. 신설>
7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<2023. 3. 30. 신설>
8. 개인정보보호 관련 신규 추진 사업 및 연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<2023. 3. 30. 신설>
9. 개인정보보호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<2023. 3. 30. 신설>
10. 기타 교무처장이 부의한 사항 <2022.06.02. 신설> <2023.3.30., 2024.2.22., 2024.3.20. 개정>

제3조(구성)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1.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또는 관련부처 팀장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, 결원에 의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2009.05.20., 2022.06.02., 2023.3.30., 2024.2.22., 2024.3.20. 개정>
2.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.
3.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. <2022.06.02. 신설><2024.2.22., 2024.3.20. 개정>

제4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<2022.06.02. 개정>

제5조(회의)

1.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2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3. 필요에 따라 특정의 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문위원에게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.

제6조(기타사항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
제7조(비밀유지 의무) 위원은 학교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에 관해서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 <2022.06.02. 신설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신안산대학교 전산정보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폐지한다.

제3조(규정명 변경)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에서 정보화위원회 규정으로 명칭 변경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2조(기능), 제3조(구성)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